

2012. 4. 9. Vol. 15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현장체감형 정책과제 120개 과제 발굴·개선
2011년 농지 전용면적 집계 결과

거시경제 동향

2011년 국민계정(잠정)

기획 정보

일본 농정의 최근 동향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1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
제19개 총선, 정당별 농업부분 공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현장체감형 정책과제 120개 과제 발굴·개선

※ 본 자료는 4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현장체감형 정책과제 120개 과제 발굴·개선」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14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고객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19개 정책과제**(지원사업 121개, 정책대안 107, 규제개선 89 등) **발굴**
- 319개 정책과제 중 120개는 수용 가능하나, 199개 과제는 지원원칙, 타당성·형평성 차원에서 수용 곤란
 - ※ 수용곤란 과제 예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법령 폐지,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경비 지원,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비지원 차등화 등
- 현장체감형 정책과제 검토 현황: 단기 반영과제 96개, 중장기 검토 과제 5개, 관계부처 협의 과제 19개

□ 단기 반영과제(96개) 주요 내용

1.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성장동력 확충(25개)

- 기후변화, 논 타작목 재배 등에 따른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변경**
 - ※ (현행) 설계빈도 20년, 허용침수 20시간 → (개선) 20년 이상, 작물별 침수시간 고려
- **가축 관리사 설치면적 명문화**로 주거목적의 불법이용 방지
- **보온커튼 사용접수 다양화**(5겹 이상 → 에너지 이용 효율 고려), **벼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정부공급 → 지자체 자체 공급 추가)
- **귀농·귀촌 지원 확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 완화(100시간 교육 → 50)

2. 농식품 유통 효율화(19개)

- ‘막김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전통식품 표준규격 용어’ 제정
- **농협 공선출하회 육성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고, 거점APC 사업자 신청서류 간소화(설계도 → 설계개요 등으로 대체)
- 소량 출하자를 위해 농협공판장을 통한 **영농희단위 이동경매 시스템 운영**
- 로컬푸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홍보지원 및 직거래장터 확대

3. 농어가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16개)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제도개선(종합위험방식 적용 확대)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사용용도 확대(시설설치, 기계구입 등)
- **과수·시설원에 주산지에 현행 농기계 임대사업 이외 전용 농기계 지원**

4. 농어촌 지역개발 활성화(13개)

- 산골짜기 휴경농지의 등고선식 개발, 습지조성 등 ‘경관농지’ 개발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S/W업체 선정방식 개선(제안심사평가 폐지 → 전문업체 풀 선정·활용) 등 지역개발사업 관리강화 및 효율화

5. 축산업 선진화(11개)

- **축산업 허가제 기준 재검토**(축사 내 매몰지 확보,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등), 도축장 시설기준 설정, 한우 정책 공급체계 개선
-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 개선(월령에 따른 감액), 구제역 백신비용 분담농가 기준 변경(개인별 사육두수 → 농가단위) 등

□ 중장기 검토(5개)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제(20개)

- (중장기 검토과제) 토양개량제 공급 시 자부담 신설, 배 꽃가루 채취용 포장단지 조성, 친환경축산업 직불제 확대, 관리선 사용 승인절차 간소화, 패류껍질어업에 합성수지 어구사용 허용
- (관계부처 협의 과제) 규제완화, 재정·세제지원 확대, 제도개선 등 추진
 - (규제완화) '자연공원법' 상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농업 허용 등
 - (재정·세제지원)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건강·연금보험료, 농어촌 인력 등 지원 확대, 재해복구 지원대상 및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
 - (제도개선) 농기계 내용연한 조정, 농협·대형마트 수수료 개선 등

주요 농정 이슈_2

2011년 농지 전용면적 집계 결과

※ 본 자료는 3월 30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2011년 한 해 동안 1만 3천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1년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13,329ha로 전년대비 28.8% 감소
 - ※ 2011년 전용면적은 여의도 면적(약 848ha)의 약 16배에 해당하며, 전국의 시·군 중에서 경지면적이 50번째로 큰 충청남도 서천군의 전체 경지면적(13,388ha)과 비슷한 규모
- 최근 5년 사이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연평균 농지 전용면적은 2만ha 수준

<최근 5년간 농지전용 추이>

단위: ha,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용면적	24,666	18,215	22,680	18,732	13,329
전년대비 증감율	52.1	△ 26.2	24.5	△ 17.4	△ 28.8

- 용도별로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6,321ha,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1,789ha가 전용되어 공공시설과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8,110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61%를 차지
 - ※ 공공시설: ('07) 11,961 → ('08) 8,369 → ('09) 9,427 → ('10) 7,603 → ('11) 6,321
 - ※ 공업시설: ('07) 2,249 → ('08) 2,490 → ('09) 5,370 → ('10) 2,766 → ('11) 1,789
- 2011년 광·공업시설은 산업단지 지정 추세가 둔화되면서 농지전용 면적은 35% 감소하였으며, 택지 등 주거시설도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농지전용 면적이 58% 감소
 - ※ 주거시설: ('07) 3,949ha → ('08) 2,424 → ('09) 2,632 → ('10) 4,378 → ('11) 1,828

- 한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전용은 2,526ha로 전체 농지전용면적의 19% 차지

<최근 5년간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추이>

단위: ha,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전용면적	24,666	18,215	22,680	18,732	13,329
농업진흥지역 전용면적	5,125	3,190	4,004	2,429	2,526
비 율	20.8	17.5	17.7	13.0	19.0

<연도별 · 용도별 농지전용면적>

연도별	총면적	공용·공공용시설 및 공익시설	주택시설	학교시설	광·농·어업 ·공·농·어업 ·공·농·어업	기 타
'81	1,521	987	165	65	49	226
'82	1,233	519	174	136	49	327
'83	1,987	1,205	255	105	88	260
'84	1,933	762	585	89	145	320
'85	2,122	1,266	296	61	200	249
'86	2,563	1,171	910	101	101	121
'87	3,542	2,191	286	79	485	324
'88	4,844	2,481	1,165	47	224	675
'89	7,096	3,169	1,885	113	923	503
'90	10,593	4,402	2,229	72	2,415	882
'91	11,861	4,801	2,882	110	1,730	594
'92	12,255	6,065	1,465	64	1,325	1,036
'93	13,207	5,398	1,482	97	1,148	970
'94	11,984	3,495	1,722	*	1,382	1,684
'95	16,279	5,252	2,352	-	1,675	2,313
'96	16,611	5,421	2,787	-	1,602	2,519
'97	15,395	5,862	2,839	-	1,920	2,409
'98	15,141	9,253	2,080	-	1,114	1,128
'99	12,017	6,481	1,442	-	1,054	1,328
2000	9,883	4,059	1,742	-	1,142	1,359
2001	10,209	4,838	1,277	-	1,048	1,340
2002	13,275	5,857	1,971	-	1,471	1,804
2003	12,996	5,613	2,491	-	1,114	1,793
2004	15,686	6,887	3,804	-	915	1,783
2005	15,659	7,396	2,340	-	862	2,245
2006	16,215	5,593	3,517	-	1,334	2,442
2007	24,666	11,961	3,949	-	2,249	1,570
2008	18,215	8,369	2,424	-	2,490	893
2009	22,680	9,427	2,632	-	5,370	849
2010	18,732	7,603	4,378	-	2,766	768
2011	13,329	6,321	1,828	-	1,789	669

거시경제 동향

2011년 국민계정(잠정)

※ 본 자료는 3월 3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국민계정(잠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경제성장 및 실질 국민총소득

- 2011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3.6% 성장

- 이는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기 때문임.

- 2011년 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1.5% 증가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증감률>

(2005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연 간		2011 ^P (원계열)				2011 ^P (계절조정계열)			
	2010	2011 ^P	I	II	III	IV	I	II	III	IV
국내총생산 (G D P)	6.3	3.6	4.2	3.5	3.6	3.3	1.3	0.8	0.8	0.3
농 립 어 업	-4.4	-2.0	-7.9	-1.9	-4.1	3.7	-3.0	4.5	-5.2	8.2
제 조 업	14.7	7.2	10.0	7.5	6.3	5.4	3.3	1.2	1.1	-0.3
건 설 업	-2.7	-4.6	-9.6	-7.1	-2.7	-0.6	-4.3	1.8	2.8	-0.2
서 비 스 업	3.9	2.6	2.8	2.7	2.6	2.5	1.0	0.3	0.4	0.7
민 간 소 비	4.4	2.3	2.9	3.0	2.1	1.1	0.6	0.8	0.2	-0.4
정 부 소 비	2.9	2.1	1.4	1.8	3.3	1.8	0.7	0.8	1.2	-0.8
설 비 투 자	25.7	3.7	10.3	7.7	1.2	-3.3	-1.6	4.7	-1.8	-4.3
건 설 투 자	-3.7	-5.0	-11.0	-4.2	-4.0	-2.1	-4.4	3.5	-0.5	0.1
재 화 수 출	16.0	10.5	18.6	10.9	10.3	3.8	4.1	0.4	2.1	-2.7
재 화 수 입	18.4	8.7	13.8	10.0	8.0	3.5	3.2	2.7	1.4	-3.6
국민총소득 (G N I)	5.6	1.5	1.9	0.6	1.2	2.2	0.0	0.7	0.6	1.0

주: 원계열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계절조정계열은 전기비 증감률

- 농림어업 총생산은 전년대비 2.0% 감소

- 농업은 전년대비 2.2% 감소

· 재배업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2.2% 줄었으며 축산업은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2.0% 감소

- 임업은 식용임산물 작황 악화로 3.0% 줄었으며 어업은 해면어업 부진 등으로 1.4% 감소

<농림어업의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구 분	2009	2010	2011 ^P				
			연 간	I	II	III	IV
농 립 어 업	3.2	-4.4	-2.0	-7.9	-1.9	-4.1	3.7
농	2.5	-4.7	-2.2	-10.0	-2.5	-3.2	4.6
재 배 업	2.1	-7.5	-2.2	-10.7	-3.2	-3.6	5.2
축 산 업	4.8	7.8	-2.0	-8.2	0.5	-1.5	1.8
임	15.4	3.3	-3.0	-5.0	5.7	-7.2	-5.5
어	2.2	-6.5	-1.4	4.9	-5.1	-11.2	3.7

□ 경제규모 및 1인당 국민소득

- 2011년 중 국내총생산(명목GDP)은 1,237.1조원으로 전년보다 5.4% 증가

- 미국달러 기준으로는 환율하락(연평균 △4.2%)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한 1조 1,164억 달러를 기록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2,489달러로 전년(20,562달러)보다 1,927달러 증가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의 추이>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2008	2009	2010	2011 ^P
국 내 총 생 산 (GDP)	조원 억달러	1,026.5 9,309	1,065.0 8,344	1,173.3 10,147	1,237.1 11,164
1 인 당 G N I ¹⁾	천원 달러	21,127 19,161	21,751 17,041	23,775 20,562	24,920 22,489

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에 따른 2006~2010년 중 추계인구수 변경을 반영하여 중전 발표하였던 1인당 GNI 수정

<용어 정의>

- GDP(국내총생산):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 합계액[GDP = GNP(국민총생산) - (해외로부터의 순소득)]
- GNP(국민총생산): 국민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서비스)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
- GNI(국민총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 [GNI = GDP +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 (국외수취 요소소득- 국외지급 요소소득)]

기획 정보

일본 농정의 최근 동향

※ 본 자료는 박준기 외, 「농업부문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설정 연구-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6의 내용 중 일본 사례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일본 농업구조 변화

- (농업의 축소) 일본 농업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농지면적 및 농지이용률 저하 등으로 인해 **농업기반이 지속적으로 감소**

- 농가수: '60년 618만 호 → '10년 253만 호, '60년 대비 59.1% 감소
- 농지면적: '71년 609만 ha → '10년 459만 ha, '71년 대비 24.6% 감소
- 농업생산액: '90년 7조 9,377억 엔 → '08년 4조 4,295억 엔, '90년 대비 44.2% 감소

- (농업취업인구의 고령화) 판매농가의 농업취업인구는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 농업취업인구: '95년 482만 명 → '10년 260만 6천 명, '95년 대비 45.9% 감소
- 농업취업인구의 평균연령: '95년 59.1세 → '10년 65.8세

- (경영규모의 확대) 경지면적과 농가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농가수 감소가 급격하여 토지이용형 농업의 **호당 경영규모는 서서히 확대**

- 호당경영규모: '95년 1.20ha → '10년 2.19ha

- (자급률 및 쌀 소비 감소) 농업생산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로 자급률과 쌀 소비량 감소

- 자급률: '70년 60% → '00년 40% → '10년 40%

※ 생산 장려 정책으로 최근 40% 수준 유지, 2020년 자급률 목표치 50%

- 1인당 쌀 소비량: (백미) '62년 118kg → '09년 58.5kg, (총소비량: 현미) '63년 1,341만 톤 → '10년 811만 톤

□ 새로운 영농형태 등장

- (마을영농) 영세농가들의 자연성 조직경영체로 신규소요미, 채소, 대두 등의 복합경영 또는 가공·직거래 등 다각경영으로 고부가가치 실현
-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상공연대 출현) 농가 주도의 직거래 매출액 급증, 자본·기술집약 부문(채소, 과일, 축산 등)으로 농외기업의 진입, 농가와 기업간의 연대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등장

□ 농정 추진방식 개편

- (농정개혁의 배경) 농업자원 유실, 국제규율 강화 및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적합성 유지, 식량위기의 심각성 등으로 인해 농정개혁의 필요성 증대
 - 농정의 방향: ① 규모확대와 공동이용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② 마을영농, 농외기업의 농업진입, 제3섹터 등 **다양한 경영체 육성**
- (농정의 3영역) **식량정책**(식량의 안정적 공급)·**농업정책**(경영안정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농촌정책**(자원 보전 및 국토의 균형 발전)
 - ※ 일본의 농정개혁은 '92년 '새로운 식량·농업·농촌정책의 방향'(신정책)에서 시작
- (농정의 4대 이념) '99년 제정된 새로운 기본법에서 제시된 농정의 4대 이념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5년마다 갱신)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농정 추진 근거 마련**
 - 농정의 4대 이념: 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농정의 최상위 개념), ② 다원적 기능발휘, ③ 농업의 지속적 발전, ④ 농촌 진흥

□ 민주당 농정의 특징

- (문제의식) '**농가소득 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를 농업의 최대 문제로 인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입 확대
 - 농림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농촌경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제시

- (정권공약: 매니페스토) 기본법 정신의 계승과 기본계획에 의한 정책 추진에 근거하여 정권 교체 후에도 종전의 농정이념, 추진방식 유지
 - 정책과제: ① 지구온난화와 지구의 자원문제 대응, ② 식량자급률 하락과 식품의 안전·안심에 대한 기대상실 대응, ③ 농산어촌 붕괴 위기 대응
 - 과제 달성을 위한 수단 ① 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 ② 농산어촌 6차산업화 추진
 - ※ 자급률(열량기준) '90년 40%에서 '20년 50%로 향상 도모

<호별소득보상제도>

- **쌀을 감산**하는 대신 **전락작물**(맥류, 대두, 사료작물, 신규수요미, 메밀, 유채 등)을 **증산하여 자급률 향상 도모**(11년 전면 도입)
 - ※ 쌀의 사료화 추진에 중점 → 주식용 감산, 사료용 증산
- 직불제 유형
 - 쌀 소득보상직불제: 쌀 가격하락 대응, 고정지불과 변동지불로 보전
 - 논활용 소득보상직불제: 쌀 대체품목의 생산증대를 위해 소득보전
 - 밭작물 소득보상직불제: 논·밭 대상, 밭작물 증산을 위해 소득보전

<농산어촌 6차산업화>

- **지역 단위에서 지역 자원**(농림수산물, 바이오매스, 자연에너지, 경관·통 문화 등)을 **활용하여 고용 및 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유형
 - 농림어업자가 생산·가공·유통을 일체화하여 소득 증대
 - 농림어업자가 2차·3차 산업과 연대하여 지역비즈니스 또는 새로운 산업 창출

<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 경영체 육성: 판매농가 전체(개별경영체, 마을영농)
- 농지 확보(농지감소 추세 감안): '20년 461만 ha('08년 463만 ha)
- 경지이용률 제고: '20년 108%('08년 92%)
- 전락작물(맥류, 대두, 사료작물, 신규수요미, 메밀, 유채 등) 증산

□ 2012년 농림수산업예산과 중점정책

- (2012년 예산) 2조 3,284억 엔으로 작년(2조 2,712억 엔)보다 2.5% 증가
- 2012년 총 직불금은 7,936억 엔으로 전년대비(9,185억 엔) 13.6% 감소, 농림수산업예산의 34.1% 차지

※ 호별소득보상제도: 6,890억 엔, 전년대비 13.9% 감소

→ 쌀 변동지불: 294억 엔으로 전년대비 78.9% 감소

※ 기타직불금: 1,046억 엔, 전년대비 11.5% 감소

<호별소득보상제도 관련 예산내역>

구 분	2011	2012	'11년 대비 '12년 증감률
호별소득보상제도(A)	8,003	6,890	-13.9
발작물 소득보상직불	2,123	2,123	0.0
논활용 소득보상직불	2,284	2,284	0.0
쌀 소득보상직불(고정지불)	1,929	1,929	0.0
쌀 변동지불	1,391	294	-78.9
가산지불	150	150	0.0
추진사업비 등	126	110	-12.7
기타직불제(B)	1,182	1,046	-11.5
중산간지역지불	270	259	-4.1
농지·물보전관리직불	285	247	-13.3
환경보전형농업직불	48	26	-45.8
감미자원·사탕수수직불	579	514	-11.2
직불제 합계(C=A+B)	9,185	7,936	-13.6
농림수산업예산(D)	22,712	23,284	2.5
C/D	40.4	34.1	-

자료: 농림수산성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4월 2일~6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정부·양돈업 극적 타협…돼지 출하 중단 계획 철회

- 대한양돈협회, 4.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국내산 돼지 출하 중단 계획 및 항의 집회 철회. 양돈협회 회장단 및 각 도별 대표로 구성된 7인의 협상단이 4.1일 오후 4시부터 정부 관계자와 9시간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출하 중단 20분 전인 저녁 11시 40분경 극적 타협. 정부, 당초 2분기 삼겹살 무관세 수입물량을 7만톤→2만톤 축소, 생산비 이하로 돼지가격 하락 대비 민간자율비축지원 자금 1000억 원 지원, 정부와 양돈협회가 공동으로 상시 대응 TF팀 운영 결정

자료: 농축유통신문(2012.4.2).

□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 요구 거셀 듯

미국·호주산 쇠고기 점유율



- 미 무역대표부(USTR) 4.2일 보고서, “한국 쇠고기시장의 전면 개방을 논의하는 협상 조만간 한국에 협상 요청” 뜻 밝혔으며 요청 시 7일 이내 응해야함.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제한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란 ‘일시적인 조치’. FTA 발효·국내소비자 거부감 감소 판단으로 30개월령 이상도 수입 하도록 압박 예상. 한국 수입쇠고기시장 점유율은 2008년 21.9%(이하 검역량 기준), 2011년 25.3%에 불과했지만 2010년 36.9%→2011년 37%→2012년 1~2월 44.8%로 호주산을 제치고 1위 탈환<그림 참조>.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호주산보다 2.7% 낮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의 점유율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

자료: 농민신문(2012.4.6).

□ 1분기 농식품 수출 18억 달러 돌파

- 1분기 농림수산물 수출 18억 달러 돌파. 전년 동기대비 11.2% ↑ 수치로 신선 농식품(27.5%)을 비롯 수산물(13.5%), 가공식품(6.7%) 등 (파프리카·김 등) 전 부류 고른 성장세.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17.3%)·일본(15.0%)·중국(13.6%) 등 주요국 수출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러시아(△8.9%)·대만(△26.4%) 수출 감소세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4.5).

□ 행복안 농어촌 조성 5조 5,305억 원 투·융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3.30일 올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보다 3.3%증가한 5조 5,305억 원 투·융자 시행 계획 심의·확정. 농어업인 연금·건강보험은 지난해보다 80억 원 늘어난 2,593억 원 지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대상을 농어촌 전체 학교로 확대,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11개소, 테마과학관 9개소, 복합체육시설 9개소도 건립. 기초 인프라 확충 차원의 농어촌 마을정비, 노후불량주택개량, 상수도 보급 확대 등에서 지난해 대비 2.9% 증가한 2조 3,903억 원 투자, 아울러 향토자원과 농어촌기업을 연계한 특화농공단지 6개소 신규 조성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4.3).

□ '농어업 유산' 지정·보존제도 도입

- 농식품부, 4.4일 후대에 물려줄 만한 농어촌 자원을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해 보전하는 제도 도입 발표. 전남 완도의 구들장논, 경남 남해의 다랑이논, 전남 신안의 염전처럼 보전·전수·활용이 필요한 자원을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7월께 결정)한 뒤 지역 브랜드 및 관광과 연계시키고, 아울러 지정된 유산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독창성이 뛰어난 자원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추진

자료: 농민신문(2012.4.6).

연구 지원 정보_1

2011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 본 자료는 3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2011년산 논벼(쌀) 생산비

- 10a당 논벼 생산비는 628,255원으로 전년보다 13,916원(2.3%) 증가
 - 위탁영농비, 농구비, 영농광열비, 토지용역비 증가 등에 기인
- 80kg당 쌀 생산비는 98,031원으로 전년보다 382원(0.4%) 감소
 - 현백률 92.9% 적용: ('10) 98,413원 → ('11) 98,031원(-0.4%)
 - 조정현백률 90.4% 적용 시: ('10) 101,135원 → ('11) 100,877원

< 논벼(쌀) 생산비 >

단위: 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액	증감률
10a당 논벼 생산비	614,339	628,255	13,916	2.3
- 직접생산비	371,513	372,595	1,082	0.3
- 간접생산비	242,826	255,661	12,835	5.3
80kg당 쌀 생산비	98,413 (101,135)	98,031 (100,877)	-382 (-258)	-0.4

주: ()는 '11년부터 조정한 현백률 90.4% 적용치임

□ 연도별 논벼(쌀) 생산비 추이

- (10a당 논벼 생산비) 2008년까지는 증가 추세였으나 2008년, 2009년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토지용역비 감소 등으로 2010년까지 생산비가 감소하였고, 2011년은 산지 쌀값 상승에 따른 토지임차료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생산비가 2.3% 증가
- (80kg당 쌀 생산비) 흉작이었던 2010년보다 10a당 쌀 생산량이 증가하여 다소 감소

< 연도별 논벼 생산비 현황 >

단위: 원, %, kg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a당 논벼 생산비	607,354	629,677	624,970	614,339	628,255
- 증감률	1.2	3.7	-0.7	-1.7	2.3
80kg당 쌀 생산비	101,491	94,215	90,758	98,413(101,135)	98,031(100,877)
- 증감률	7.2	-7.2	-3.7	8.4	-0.4
10a당 쌀 생산량	466	520	534	483(470)	496(482)
- 증감률	-5.5	11.6	2.7	-9.6	2.7

주: ()는 '11년부터 조정한 현백률 90.4% 적용치임

□ 논벼(쌀) 수익성

○ 연도별 순수익 및 소득

- 논벼 10a당 순수익률 및 소득률은 2008년은 10a당 생산량 증가(11.6%)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로 상승하였고, 2009년, 2010년은 쌀값 하락에 따른 총수입이 감소하여 하락
- 2011년은 쌀값 상승에 따른 총수입 증가로 10a당 순수익률은 35.1%, 소득률은 58.9%로 전년보다 9.8%p, 6.1%p 상승

< 연도별 순수익 및 소득 추이>

단위: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수입(A)*	854,241	1,013,362	944,438	822,229	968,142
생산비(B)	607,354	629,677	624,970	614,339	628,255
경영비(C)	364,293	389,620	395,126	388,068	398,097
10a당 순수익(A-B)	246,887	383,685	319,468	207,890	339,886
- 순수익률**	28.9	37.9	33.8	25.3	35.1
10a당 소득(A-C)	489,948	623,742	549,312	434,162	570,045
- 소득률***	57.4	61.6	58.2	52.8	58.9

* 총수입은 주산물(벼, 쌀) 및 부산물(벼짚) 판매수입

** 순수익률=(총수입-생산비)/총수입×100, *** 소득률=(총수입-경영비)/총수입×100

연구 지원 정보_2

제19대 총선, 정당별 농업부문 공약

※ 본 자료는 각 정당별 제19대 총선 공약집 가운데 농업부문내용을 정리한 것임.

□ 새누리당

(1) FTA 보완 대책 확실한 집행과 농어업 피해예방 만전

- FTA대책 이행점검을 위한 국회·정부·농어민대표의 협의체 구성
 - 이행점검협의체 구성 '12년 완료
 - 농어업 지원을 위해 '17년까지 지원규모 22.1조원('11.8월)에 2.0조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 24.1조원(세제지원 제외) 지원 예정
- 정부는 FTA 대책 집행상황 매년 국회 보고
- FTA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예산 편성 시 차질 없이 반영

(2) 경쟁력 있는 창업인력 및 전문 경영인력 양성

- 농수산현장과 연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현장-학교 연계 프로그램: '17까지 60개 고교 대학
- 핵심 경영 인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매년 2만 명씩 강소농 육성
 - 농어민단체가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매년 2만 명씩 강소농 육성

(3) 고품질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시스템을 확립

- 친환경 농수산물의 비중을 현재 7%에서 15%수준으로 확대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확대('12년 41개소→'17년 50개소)
 -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개장('12년 1개소 → '15년 2개소)
- 친환경 농수산물의 인증제를 강화하고 유통을 차별화
 -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확대 및 강화('13년 이후 시행)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생산환경(토양, 용수 등)과 생산자재(비료, 농약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
-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식품안전 감시기구 운영

(4) 국민 기초식량인 쌀의 적정 생산기반 구축

- 쌀 적정 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목표가격제 운용
 - 쌀목표가격('13~'17)결정, 쌀 직불제 관련 규정 검토
-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및 소비기반 확대
 - 가공용 쌀 재배단지 연차별 확대 : 가공용 쌀 '17년까지 70만톤
- 공동육묘, 공동방제, 공동마케팅이 가능한 들녘별 경영체 확대
 - 쌀 들녘별 경영체 확대 : '17년 700개소

(5) 농어업재해보험 단계적 확대

- 일부지역에 한정하는 품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규품목을 추가(농산물 35개, 수산물 17개)
- 특정재해(태풍, 우박 등)만을 보상하는 과수(5개 품목)에 대해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6) 농자재 지원 확대로 농가경영부담 완화

- 조사료생산단지 확대와 국제곡물가 급등에 대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 간척지·하천부지에 친환경비료를 사용하여 유채·호밀 등 조사료 재배
 - 정부·사료업체·축산농민이 공동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 누구나 희망하면 농기계를 빌려쓰고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농기계 은행(논농사용), 농기계임대(밭농사용) 확대
 - 농협 농기계은행과 시·군 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 '17년 400개소로 확대하고, 상호 연계 운영하여 농민편의 제고
 - 대형분무기, 무인헬기 등으로 농약살포 작업 서비스 확충

(7) 수산식량 확보를 위한 수산자원조성과 연근해어선 등 현대화

- 바다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조성 확대
 - 연안 바다목장 사업 확대: '17년 70개소
 - 바다숲을 조성하여 어류 산란·서식장 보호: '17년 1,200ha
- 노후한 연근해 어선의 현대화 자동화 지원
 - LED 집어등, 고효율엔진 등 에너지 절약형 어선건조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
- 획기적인 어선원 안전조업 대책을 강구
 - 연근해 어선에 선박위치발신장치, RFID 구명조끼 등을 보급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 중국어선 불법단속 전담선 1,000톤급 4척 건조

(8) 살기 좋고 깨끗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

- 농어촌 폐슬레이트 지붕 없애기
 - 폐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 확대 : ('12년) 1만동 → ('13년 이후) 2~3만동
 - 폐슬레이트 전용매립장 설치 등 슬레이트 처리제도 개선
 - 폐슬레이트 지붕 처리 예산 확대
- 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와 노후주택 개량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추진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법」 제정, '13년 시범사업 실시, '14년부터 연차적 추진

(9) 농어촌에 질 좋은 수돗물 제공

-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마을하수도 및 먼단위 시설 확충

□ 민주통합당

(1) 식량자급률을 높여 먹을거리 안정적 확보

-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적정수준까지 제고

- 현행 26.7%(‘10년)인 곡물자급률을 ‘15년 32.0%, ‘20년까지 35.0% 달성 등 곡물·식량 목표치 재설정
-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 농지전용을 막고 축산현대화를 가속화 하는 등 생산기반을 유지·확충·개선
 - 밭 기반 정비, 2모작 활성화 및 동절기 유희농지 활용 등을 통해 잡곡 생산 확대
 - 생산시설현대화로 축산·과수·채소 생산 확대
 - 도시농업 연구·개발하여 확산
 - 생산비 절감, 인력양성, 농어촌활력증진 사업 등과 연계 추진

(2) 농림수산분야 IT 융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농어업 대비

- 농림수산분야 IT 융합 환경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농어업에 대비
 - 「농산어촌 IT 융합사업 기본계획」 수립
 - 농산어촌의 △정보화 단말기 보급률을 확대하고 △인터넷 이용률을 증대시키며 △초고속가입자망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IT 인프라 구축
 - 이를 통하여 시설재배농가에 환경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제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적의 성장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IT 융합사업 구축

(3)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고 고정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 안정

- 쌀 소득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킴으로써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기여

(4) 정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신보 심사·지원 체계 개선

-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신보 심사·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시설 투자를 활성화 하고 농어가 부담 완화
 - 현행 3%인 정부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여 농가부채도 줄이고 경쟁력도 제고

※ 현재 시설현대화자금은 1%,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은 0~2% 또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중 개성공단 운영경비는 1%, 남북교역·경협기업 중 5.24조치로 피해기업 2% 지원 중임

- 시설현대화 사업 등이 원활히 대출될 수 있도록 농신보의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농신보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신용 위주의 심사에서 농업 경영체의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구축
- 중장기적으로 농신보를 농어업인의 신용보증 활성화를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의 농어업금융 활성화 방안 제시

(5)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지원을 확대하여 동시다발적 FTA시행과 구제역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어려움 해소
 - 축산농가에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중인 ‘사료가격안정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
 - ‘축산발전기금’을 향후 10년간 25조원 조성 및 축사시설현대화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
 -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전기에 농사용전기로 적용
 - 4톤 미만 스kid로우더와 농어업용 1톤 트럭도 농업용면세유 대상에 추가하고 일몰기한 영구화 추진
 - 축산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 소득공제액: 1,800만원 → 2,000만원
 - 소: 30두 → 50두, 돼지: 500두 → 1,000두, 닭·오리: 15,000수 → 30,000수
 - FTA피해보전직불제 대상에 축산 포함
 -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 지속 적용

(6) 농·어민에 특화된 ‘삶의 질’ 개선 대책 시행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설치, 농어촌 정신건강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농어촌 삶의 질 개선
-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현재 국고(30~50%)를 지원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추진이 곤란, 국고지원율을 대폭 늘리고 2017년까지 완전철거 되도록 추진
- 농어촌 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및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대폭 확충하여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생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농어촌 정신보건센터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정신건강 지킴이'를 통해 농약병관리와 방문 및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 통번역 서비스 확대, 다문화교육 개발 및 대학생 멘토링 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확대
- 농어촌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 확대로 체험형 문화 제공

(7) 성공적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 확대

- 성공적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에 젊은 인력 수혈 및 농어촌 활력 제고
- 귀농인 구입농지 취득등록세 감면 확대 (현행 50% 감면)
- 농지은행의 임차농지를 귀농인에게 우선배정
- 농지구입 지원단가에 감정가를 적용하여 지원 현실화
- 귀농·귀촌 정보시스템 통합하여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 '신문고 제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애로사항 신속 개선
- 온·오프라인 귀농교육을 확대하여 성공 정착률 제고
- '귀농인의 집' 확대 운영, 주택마련 자금융자 및 수리비보조 확대시행
- 창업자금 지원기준 완화 및 컨설팅 지원 정례화 지원
- 선배 1:1 멘토링제 활성화

(8)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 확대

- 여성농업인의 권리·복지를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을 농업·농어촌의 주요 인력이자 미래의 성장동력·가치실현 주체로서 육성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개별 여성농업인도 지원
- '도우미 쿠폰제' 도입(출산·교육·휴가·질병에도 확대, 연간 일정 일수 선택하여 사용)
- 여성농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의 방통대, 일반대학 편·입학 학자금을 일부 지원 추진
-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동급식센터 설치 확대
 - 지역맞춤형 급식센터로 리모델링 및 주방기기 지원
 - 급식차량 운영비지원, 취사인력 인건비 지원
 - 운영비는 저렴한 유료급식으로 충당
- '여성농업인육성재단' 등 민간차원의 여성농업인 총괄육성기구 신설
- 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정책' 수립하여 연구·개발 강화
- 여성농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9)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신선·저렴한 수산물 공급과 어민수익 증대

- 수산물 공급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신선·저렴한 수산물 공급 및 생산자 수익증대 기반 조성
- 개방화에 대비 국내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거점별 산지 위판장의 위생품질 관리형 경매장 건립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소비자 인근 대규모 수산물 분산물류센터 구축

(10)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 남북 수산협력을 통하여 남북긴장관계를 평화적 분위기로 전환하고 북한경제에도 도움을 주면서 국내 수산업 활성화와 한반도 근해 어족자원의 효율적 관리 도모
-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수산협정 체결
-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한 공동조업 활동
- 중국어선 대신 북한수역 입어(북한선원 일정비율 승선)

- 남한의 어선·어구자재·어로 양식기술 지원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기술교류 협력
- 상호 과잉·부족 수산물 무관세 직접 교역

(11) 불법 중국어선의 효율적 단속 강화 방안 마련

- 불법 중국어선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어로구역 사수, 어족 및 어민 보호 제고
 - 한·중 간 분쟁을 최소화 하면서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선박 중심의 밀어내기 단속방안 강구
 - 1일 3교대 단속이 가능하도록 대형선박을 조기에 확보
 - 정부는 총기사용을 통한 물리적 단속을 공언하고 있지만 총기사용의 경우 더욱 극렬한 저항을 초래할 수 있고 인명피해와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므로 고속단정을 이용한 승선후 견인방식을 지양하고 불법조업 예방위주의 밀어내기 방식으로 전환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철
 -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의 경우 출항단계에서 일정기간 조업을 금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중국 정부와 해당 기관과의 교섭을 통해 관철

□ 통합진보당

(1) 식량주권, 국민기초식량보장법제정공약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 국가의 책임 하에 기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격 상하한제 실시
 - 주곡에 대한 국가수매제와 축산물,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상하한제로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먹거리 접근성 보장
- 공공급식 확대, 저소득층 기초농산물 지원확대

- 먹거리양극화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중고 무상급식 및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기초농산물 지원 확대

○ 식량자급률 50% 목표 실현

-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쌀 및 주요곡물의 자급률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감

○ 대북쌀지원 법제화와 남북농업협력강화

- 남의 쌀 생산기반 유지와 북의 식량문제해결을 위해 대북쌀지원을 법제화하고 통일시대 식량주권을 위해 남북농업협력을 강화

(2)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먹자!

○ 농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보장

- 농업생산의 필수요소인 농지와 종자에 대한 공개념을 강화하고 농민의 권리 보장

○ 목표소득직불제, 도시가구 평균소득대비 95%수준 농가소득보장

- 66%의 도농간 소득격차를 목표소득직불제로 95%까지 높여 농가 소득 보장

○ 중소농협업공동체와 농촌공동체 리더 육성

- 전체 농가 중 92.4%를 차지하는 3ha 미만의 중소농을 협업공동체화하고 농촌공동체 리더 육성으로 농업생산주체 강화

○ 생태농업으로의 전환과 지역먹거리체계구축

- 상위 10%를 위한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전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생태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생산·가공·유통의 초국적시스템을 지역먹거리시스템으로 재구축

○ 먹거리안전관리 강화

- 각 부처 간 이원화 되어있는 먹거리안전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하고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3)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현재 법률 상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와 인력배치'가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 발작물 직불제 실시
 - 여성농민이 주되게 종사하고 있는 발작물 직불제 확대
- 여성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가공 협업체 지원 확대
 - 여성농민이 주되게 참여하는 생산·가공 조직 및 협업체에 대한 지원을 여성 할당과 같이 목표 수치를 지정하여 실시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농업 정책에서의 성 인지 예산 확보
 - 성별영향평가 이후 평가를 반영하여 농업정책에서 일정 비율의 성 인지 예산 확보
- 생애주기별 특성에 입각한 여성농민 지원제도 마련
 - 고령여성농업인에게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신규 여성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정책 마련

(4) 농가물락저지, 농촌경제복구대책 추진

-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중단,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
 - 사상최악의 농업말살 협상 한미FTA 전면폐기, 그나마 버티고 있는 한국농업의 붕괴를 초래할 중국과의 FTA 추진 중단, 기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한 폐기 및 재협상
- 농협법 전면 재개정
 - 지주회사방식의 농협법 개혁안을 폐기하고 연합회 방식으로 개정,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농민조합원에 의한 직선제로 개정
-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가부채 해결
- 축산농가 생산기반유지와 가격안정
 - 사료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법 제정으로 축산농가 생산기반 유지, 축산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및 농업재해보험제도 확대
 - 농업노동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이상기후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확대

(5) 지역복지공동체로 살맛나는 농촌, 행복한 농민

-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활력 있는 농촌
 - 농업축소에 따른 일자리 축소로 농촌 공동화와 빈곤 심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돌아오는 농촌, 농촌경제 활성화
- 교육 걱정 없는 농촌
 - '농산어촌지역 작은 학교' 유지로 농촌교육 근거지보존 및 창의력향상, 인성개발을 함양하는 학교로 특성화하는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 보육 걱정 없는 농촌
 - 면단위 1개소 이상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농어촌 무상보육 우선 실현
- 의료 걱정 없는 농촌
 - 농촌지역부터 국공립거점병원 구축, 주민주치의 제도 우선 도입
-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와 마을공동체까지 복지전달체계 확립
 -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효율적,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실시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